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9. 14.(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22-46-169~17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엠투엠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에스아이티, 주식회사 쿼넷시스템즈, 주식회사 태성아이엔씨, 주식회사 아레나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한 엠투엠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쿼넷시스템즈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00만원, 주식회사 비에스아이티, 주식회사 태성아이엔씨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60만원,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중단한 주식회사 아레나에 대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엠투엠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에스아이티, 주식회사 쿼넷시스템즈, 주식회사 태성아이엔씨와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한 주식회사 아레나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실 관계입니다. 엠투엠글로벌(주)은 '09년 6월 19일에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8년 12월 31일에 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주)쿼넷시스템즈는 '14년 12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년 12월 31일에 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주)태성아이엔씨는 '15년 11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8년 4월에 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주)비에스아이티는 '14년 5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8년 12월 31일에 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주)아레나는 방통위에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다 '21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휴·폐업 신고 없이 '21년 11월경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 위반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폐업 절차 위반 시 사업 정지 또는 사업 폐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법성 판단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엠투엠글로벌(주) 등 4개사가 휴·폐업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아레나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다가 휴·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제출의견 및 검토내용입니다. 엠투엠글로벌(주)은 향후 관련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고 클라우드 서버 이전을 검토 중이었을 뿐, 방통위의 승인 없이 사업자 휴·폐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태점검 시에 확인서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위치정보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퀀텟시스템즈는 폐업 시 방통위의 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폐업 승인 절차를 안내 받고 폐업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제출하였습니다. (주)비에스아이티는 위치정보사업 운영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하였고, 중단 당시 관련 자료를 포맷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주장하였습니다. (주)태성아이엔씨는 2018년 4월 사업을 일시 중단했고,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였음에도 휴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퀀텟시스템즈 등 3개 사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횟수·동기·내용·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아레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서버비용이 부담되어 서버를 끊어놓은 상황으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신고 이후 (주)아레나에 대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긴 하였으나 서비스가 유지되었고 '21년 11월에 서버를 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방통위 신고 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위치정보법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사업 개시 후 휴·폐업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하여 위치정보법 제8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3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5]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중·감경 사유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및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엠투엠글로벌(주) 등 5개 사는 실태점검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40%를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엠투엠글로벌(주)와 (주)퀀텟시스템즈는 각 '22년 8월 16일과 '22년 7월 26일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폐업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추가로 각 감경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주)비에스아이티와 (주)태성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360만원, 엠투엠글로벌(주), (주)퀀텟시스템즈에 대해 각각 300만원, (주)아레나에 대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상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 내 사업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등록·신고 후 장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폐업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 취소 및 사업 폐지 등이 가능하도록 제

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휴·폐업 승인 제도도 신고 등으로 완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의 위치정보사업자 첫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결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53개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45개사 총 298개사업자 가운데 정상적인 영업 운영사업자는 180개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06개사업자는 운영을 중단했거나 소재파악도 안 되는 사고사업자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든 휴·폐업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처럼 상당수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행정력의 한계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재불명 사업자나 사업중단 사업자처럼 사업자 소재 확인도 안 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사업자가 61개나 됩니다. 사무처에서 적은 인력으로 조사하는데 한계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 문제는 보다 철저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 4월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에 따라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휴·폐업 승인 체계 개선을 위해 휴·폐업 승인 제도도 신고로 완화하는 방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관해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98개사업자의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운영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 장시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엠투엠글로벌(주) 등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61개 사업자는 사업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사업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폐업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처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지금 위치정보사업자의 법적 풀네임(full name)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입니까, 위치정보사업자입니까?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입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 안을 보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페이지 '<다> 관계 법령'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데 <라> 위법성 판단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건 내에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풀네임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면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페이지 사업자 일반현황에도 '위치정보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휴·폐업 승인 신고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가 사업자 휴·폐업 이후에도 보관되어서 오·남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내용과 같이 피심인들은 위치정보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휴·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업을 하고 소재 불명된 업체와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안건 내용처럼 조속히 직권취소,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휴·폐업 신고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4분 폐회 】